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2차 개선(안) 신규대비표

[2024.06.21,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센터]

- ※ 본 개정안 신규대조표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313호)’을 기준(현행)으로 수정/보완/삭제된 사항(개선안)에 대해서만 작성함.
- ※ 국가유산청 예규와 행정안전부 예규를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예규는 ‘종합심사’, 행정안전부는 ‘종합평가’로 작성함.

현행	개선(안)	비고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생략> 10.~11. <신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생략> 10. “현장대리인”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능력 심사를 받는 배치기술자를 말한다. 11. “참여기술인”이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현장대리인이 아닌 자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 참조 조문 조정 - 조문 신설 - 조문 신설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략>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②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고시금액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중 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조문 신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 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생략>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 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문 13조에서 이동
제5조(입찰방식) <생략>	제5조(입찰방식) <현행과 같음>	
제6조(원가계산 기준) <생략>	제6조(원가계산 기준) <현행과 같음>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9. <생략>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9. <현행과 같음>	- 부연 설명 추가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생략>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현행과 같음>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1. <생략>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 <생략>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4. <생략>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 기준 변경 - 기준 변경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생략>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기준일 등) <생략>	제11조(심사기준일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생략>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⑤ <생략>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⑤ <생략>	- 내용 변경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 제4조로 이동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제14조(공동수급제 심사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가.~라. <생략>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제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제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3. <생략> ③ <생략>	제14조(공동수급제 심사방법) 제1항 <생략> 제2항 <생략> 1.<생략> 가.~라. <생략>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공동수급제 구성 및 참여기술인 투입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제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3. <생략> ③ <생략>	- 내용 변경
제15조(종합점수 산정) <생략>	제15조(종합점수 산정) <현행과 같음>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생략> ③~④ <생략>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내용 변경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생략>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결격사유 등) <생략>	제18조(결격사유 등)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심사) <생략>	제19조(재심사) <현행과 같음>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생략>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현행과 같음>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생략>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생략>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생략>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현행과 같음>																																																			
제24조(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생략>	제24조(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생략>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청구) <생략>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청구) <현행과 같음>																																																			
제27조(심사 실시) <생략>	제27조(심사 실시) <현행과 같음>																																																			
제28조(평가점수 산출) <생략>	제28조(평가점수 산출) <현행과 같음>																																																			
제29조(기타사항) <생략>	제29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제30조(재검토 기한) <생략>	제30조(재검토 기한) <현행과 같음>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th> </tr> <tr> <th>구분</th><th>평가 내용</th><th>등급</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1. 국가유산 중요도</td><td rowspan="6">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td><td>국보</td></tr> <tr> <td>보물</td></tr> <tr> <td>사적</td></tr> <tr> <td>명승</td></tr> <tr> <td>천연기념물</td></tr> <tr> <td>국가민속문화유산</td></tr> <tr> <td rowspan="4">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td><td>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td></tr> <tr> <td>유형문화유산</td></tr> <tr> <td>기념물</td></tr> <tr> <td>시도자연유산</td></tr> <tr> <td></td><td></td><td>민속문화유산</td></tr> <tr> <td></td><td></td><td>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td></tr> </tbody> </table>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1.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th> </tr> <tr> <th>구분</th><th>평가 내용</th><th>등급</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1. 국가유산 중요도</td><td rowspan="6">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td><td>국보</td></tr> <tr> <td>보물</td></tr> <tr> <td>사적</td></tr> <tr> <td>명승</td></tr> <tr> <td>천연기념물</td></tr> <tr> <td>국가민속문화유산</td></tr> <tr> <td rowspan="4">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td><td>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td></tr> <tr> <td>유형문화유산</td></tr> <tr> <td>기념물</td></tr> <tr> <td>시도자연유산</td></tr> <tr> <td></td><td></td><td>민속문화유산</td></tr> <tr> <td></td><td></td><td>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td></tr> </tbody> </table>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1.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1.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1.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문화유산자료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Ⅲ. 수리규모 5개 이상의 공종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2개 이하의 공종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상 중 하 대 중 소							문화유산자료 / 자연유산자료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Ⅲ. 수리규모 5개 이상의 공종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2개 이하의 공종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상 중 하 대 중 소							- 내용 추가																																																																																																							
														- 내용 변경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 예시 변경																																																																																																							
<table><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국가유산 중요도</th><th colspan="2" rowspan="2"></th></tr><tr><th>고</th><th>중</th><th>저</th></tr><tr><td rowspan="9">수리규모</td><td rowspan="3">대</td><td>1</td><td>1</td><td>2</td><td>상</td><td rowspan="11">수리난이도 및 복잡성</td></tr><tr><td>1</td><td>2</td><td>3</td><td>중</td></tr><tr><td>2</td><td>3</td><td>3</td><td>하</td></tr><tr><td rowspan="3">중</td><td>1</td><td>2</td><td>3</td><td>상</td></tr><tr><td>2</td><td>2</td><td>3</td><td>중</td></tr><tr><td>3</td><td>3</td><td>3</td><td>하</td></tr><tr><td rowspan="3">소</td><td>②</td><td>2</td><td>3</td><td>상</td></tr><tr><td>2</td><td>3</td><td>3</td><td>중</td></tr><tr><td>3</td><td>3</td><td>3</td><td>하</td></tr></table>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table><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국가유산 중요도</th><th colspan="2" rowspan="2"></th></tr><tr><th>고</th><th>중</th><th>저</th></tr><tr><td rowspan="9">수리규모</td><td rowspan="3">대</td><td>1</td><td>1</td><td>2</td><td>상</td><td rowspan="11">수리난이도 및 복잡성</td></tr><tr><td>1</td><td>2</td><td>3</td><td>중</td></tr><tr><td>2</td><td>3</td><td>3</td><td>하</td></tr><tr><td rowspan="3">중</td><td>1</td><td>2</td><td>3</td><td>상</td></tr><tr><td>2</td><td>2</td><td>3</td><td>중</td></tr><tr><td>3</td><td>3</td><td>3</td><td>하</td></tr><tr><td rowspan="3">소</td><td>2</td><td>2</td><td>3</td><td>상</td></tr><tr><td>2</td><td>3</td><td>3</td><td>중</td></tr><tr><td>3</td><td>3</td><td>3</td><td>하</td></tr></table>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table><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국가유산 중요도</th><th colspan="2" rowspan="2"></th></tr><tr><th>고</th><th>중</th><th>저</th></tr><tr><td>수</td><td>대</td><td>1</td><td>1</td><td>2</td><td>상</td><td>수리</td></tr></table>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대	1	1	2	상	수리	<table><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국가유산 중요도</th><th colspan="2" rowspan="2"></th></tr><tr><th>고</th><th>중</th><th>저</th></tr><tr><td>수리</td><td>대</td><td>1</td><td>1</td><td>2</td><td>상</td><td>수리</td></tr></table>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대	1	1	2	상	수리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	대	1	1	2	상	수리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대	1	1	2	상	수리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리 규 모	중	1	2	3	중	난 이 도 및 복 잡 성	규 모	중	1	2	3	중	난 이 도 및 복 잡 성	
		2	3	3	하				2	3	3	하		
		1	2	3	상				1	2	3	상		
		2	2	3	중				2	2	3	중		
	소	3	3	3	하			3	3	3	하			
		㉔	2	3	상			2	2	3	상			
		2	3	3	중			2	3	3	중			
		3	3	3	하			3	3	3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적용 가능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평가 체계							평가 체계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1	2	3	중			1	2	3	중			
		2	3	3	하			2	3	3	하			
	중	1	2	3	상		중	1	2	3	상		중	
		2	2	3	중			2	2	3	중			
		3	3	3	하			3	3	3	하			
	소	2	2	3	상		소	2	2	3	상		소	
		2	3	3	중			2	3	3	중			
		3	3	3	하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생략> 2. 주변정리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현행과 같음> 2. 주변정리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석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 · 유적	유적지	· 분묘 · 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유적	유적지	· 분묘 · 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 · 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담장 · 울타리 · 배수로 · 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 · 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담장 · 울타리 · 배수로 · 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 주 :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관련 협회의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되어 공동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수리코드를 분리하여 부여한다.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내용 보완 -내용 추가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변경 및 신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 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수리이행 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환산재해율)	+0.3, +0.2, +0.1			안전관리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5 (최대 △2.0)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0.3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차등 감점	△1, △0.75, △0.5, △0.25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3-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3-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변경 및 신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 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10	수리이행 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환산재해율)	+0.3, +0.2, +0.1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 보고의 무 위반건수)	매 건당 △0.5 (최대 △2.0)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 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 능력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차등 감점	△1, △0.75, △0.5, △0.25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 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 수리 실적	20	수리이행 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변경 및 추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매 건당 △0.5 (최대 △2.0)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0.3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차등 감점	△1, △0.75, △0.5, △0.25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 주 : 가.-마. <생략>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 주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한다.	- 내용 추가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차 <생략>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차. <현행과 같음>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환산건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제출한 배치 기술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 받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 내용 변경 및 추가 -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으로 이동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생략>	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현행과 같음>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으로 이동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 <생략>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10 + 1.0×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8 + 1.5×8 + 1.0×8)으로 산정 다. <생략>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10 + 1.0×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8 + 1.5×8 + 1.0×8)으로 산정	-내용 추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생략>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2점(= 2.0×10 + 1.5×8.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점(=2.0×10 + 1.5×8.0 + 1.0×8)으로 산정 다. <생략>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현행과 같음>	- 내용 보완
4. 수리업경력 심사 <생략>	4. 수리업경력 심사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내용 변경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3건 이상	0.3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2건	0.2	
						1건	0.1	
※ 주 : 1)~5) <생략>				※ 주 : 1)~5) <현행과 같음>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다.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심사				- 제목 변경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제목 및 내용 변경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가.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나.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정지 처분 이력	자격정지 기간의 합이 6개월(180일)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1.0	- 심사분야 추가
					자격정지 기간의 합이 6개월(180일) 미만 3개월(90일)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0.5		
					자격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30일) 이상 3개월(9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0.25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 주 : 1) <생략> 2) <신설> 3) <신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주 : 1) <현행과 같음> 2)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심사는 제6호의3서식에 따른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심사 대상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에 한하며, 기술자, 기능자 각각 자격정지 처분 이력을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 내용 추가																						
라. 안전관리 심사 <table><tr><th>심사분야</th><th>심사요소</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th></tr><tr><td rowspan="3">산업재해율</td><td>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td><td>40% 이하</td><td>0.30</td></tr><tr><td>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td><td>40% 초과 70% 이하</td><td>0.20</td></tr><tr><td>‘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 중평균 이하인 자</td><td>70% 초과 100% 이하</td><td>0.10</td></tr></table> ※ 주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40% 이하	0.30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40% 초과 70% 이하	0.20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 중평균 이하인 자	70% 초과 100% 이하	0.10	라. 안전관리 심사 <table><tr><th>심사분야</th><th>심사요소</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th></tr><tr><td>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td><td>최근 3년 동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 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td><td>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td><td>1건당 △0.5점, 최대△2점</td></tr></table>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평가기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 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로 산정한다.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최근 3년 동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 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1건당 △0.5점, 최대△2점	- 내용 변경 - 심사 분야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40% 이하	0.30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40% 초과 70% 이하	0.20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 중평균 이하인 자	70% 초과 100% 이하	0.10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최근 3년 동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 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1건당 △0.5점, 최대△2점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재해율을 제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최근 3년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3) 안전관리 심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이 최근연도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결과를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및 내용 변경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내용 변경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0.3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0.3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를 구성한 경우			를 구성한 경우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 3)으로 이동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 내용 추가 및 변경
				4)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바. 법정전문교육(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삭제>				- 신인도 평가 항목 삭제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문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 주 : 1)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최근5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 \times 100$ 2) 전문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전문교육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생략>										
<신설>	바.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심사 <table><tr><th>심사 분야</th><th>심사요소</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th></tr><tr><td>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td><t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td><td>우수업자 지정 여부</td><td>0.3</td></tr></table> ※ 주 :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	우수업자 지정 여부	0.3	- 신인도 평가 항목 신설 - 평가점수 하향 조정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	우수업자 지정 여부	0.3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평가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지정 상태가 유효해야 한다. * 예) 2021년 11월 30일에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선정된 자는 2022년 11월 29일까지 신인도 가점 인정 3)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심사로 인한 신인도 가점은 복수로 우수업자 지정이 되었더라도 입찰 건별 1건만 인정한다. 4)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심사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장이 발급하는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체 지정서 사본 1부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신설>	사. 참여기술인 투입 심사 <table><tr><th>심사 분야</th><th>심사요소</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th></tr><tr><td>참여 기술인 투입</td><td>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와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td><td>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투입</td><td>0.3</td></tr></table> ※ 주 : 1) ‘참여기술인’은 본 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 기술인 투입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와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투입	0.3	- 신인도 평가 항목 신설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 기술인 투입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와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투입	0.3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술자를 말한다. 2) 참여기술인은 해당 국가유산 수리실적(준공금액) 100%(보정계수: 1.0)를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은 투입된 해당 현장의 배치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수행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해당 현장 배치기간 105일인 경우 → 인정 현장 경력기간(일) : 73.5일* * 소수점 이하 처리: 73.5일 → 74일(최종 경력인정 일수) 4) 참여기술인 투입 시 가점, 수리실적 및 경력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 기입란에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과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 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b. 참여기술인은 현장대리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출·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현장대리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d. 해당 공사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참여기술인은 본 수리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과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5)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6)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참여 기술인(가점대상) 1인을 심사한다. 7)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당해 수리입찰 평가 시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배치 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술자와 추가 참여기술자는 투입할 수 없다. 9)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7)”에 따른 투입시점에 변경해야 할 경우 [별지 제5의 3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하여 동등(해당 수리분야 자격 취득후 3년 이상 경력)함을 승인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단, “7)”에 따른 투입시점 이후에는 배치계획서상 기재된 모든 참여기술인은 그 사유와 관계 없이 어떠한 변경 및 교체도 불가하다.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table><tr><th>심사분야</th><th>심사요소</th><th>배점</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 (1~2등급)</th></tr><tr><td rowspan="10">자산 및 유동비율</td><td rowspan="5">자기자본비율</td><td rowspan="5">3.0</td><td>A. 100% 이상</td><td>3.0</td></tr><tr><td>B. 100% 미만 75% 이상</td><td>2.8</td></tr><tr><td>C. 75% 미만 50% 이상</td><td>2.6</td></tr><tr><td>D. 50% 미만 25% 이상</td><td>2.4</td></tr><tr><td>E. 25% 미만</td><td>2.2</td></tr><tr><td rowspan="5">유동비율</td><td rowspan="5">7.0</td><td>A. 100% 이상</td><td>7.0</td></tr><tr><td>B. 100% 미만 75% 이상</td><td>6.8</td></tr><tr><td>C. 75% 미만 50% 이상</td><td>6.6</td></tr><tr><td>D. 50% 미만 25% 이상</td><td>6.4</td></tr><tr><td>E. 25% 미만</td><td>6.2</td></tr></table>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table><tr><th>심사분야</th><th>심사요소</th><th>배점</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 (1~2등급)</th></tr><tr><td rowspan="10">부채 및 유동비율</td><td rowspan="5">부채 비율</td><td rowspan="5">3.0</td><td>A. 100% 미만</td><td>3.0</td></tr><tr><td>B. 130% 미만</td><td>2.8</td></tr><tr><td>C. 160% 미만</td><td>2.6</td></tr><tr><td>D. 190% 미만</td><td>2.4</td></tr><tr><td>E. 190% 이상</td><td>2.2</td></tr><tr><td rowspan="5">유동비율</td><td rowspan="5">7.0</td><td>A. 100% 이상</td><td>7.0</td></tr><tr><td>B. 100% 미만 75% 이상</td><td>6.8</td></tr><tr><td>C. 75% 미만 50% 이상</td><td>6.6</td></tr><tr><td>D. 50% 미만 25% 이상</td><td>6.4</td></tr><tr><td>E. 25% 미만</td><td>6.2</td></tr></table>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3.0	A. 100% 미만	3.0	B. 130% 미만	2.8	C. 160% 미만	2.6	D. 190% 미만	2.4	E. 190% 이상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내용 변경 - 내용 변경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3.0	A. 100% 미만	3.0																																																										
			B. 130% 미만	2.8																																																										
			C. 160% 미만	2.6																																																										
			D. 190% 미만	2.4																																																										
			E. 190% 이상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생략> 마. <신설>	다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부채(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 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생략> 마.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경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내용 추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생략>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현행과 같음>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생략>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현행과 같음>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신설>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table><tr><th>심사분야</th><th>심사요소</th><th>평가기준</th><th>평가점수</th></tr><tr><td rowspan="6">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td><td rowspan="6">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td><td>A. 100% 이상</td><td>△0.00</td></tr><tr><td>B. 100% 미만 95% 이상</td><td>△0.20</td></tr><tr><td>C. 95% 미만 90% 이상</td><td>△0.40</td></tr><tr><td>D. 90% 미만 85% 이상</td><td>△0.60</td></tr><tr><td>E. 85% 미만 80% 이상</td><td>△0.80</td></tr><tr><td>F. 80% 미만</td><td>△1.00</td></tr></table> ※ 주 :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	A. 100% 이상	△0.00	B. 100% 미만 95% 이상	△0.20	C. 95% 미만 90% 이상	△0.40	D. 90% 미만 85% 이상	△0.60	E. 85% 미만 80% 이상	△0.80	F. 80% 미만	△1.00	- 평가기준 변경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	A. 100% 이상	△0.00																	
		B. 100% 미만 95% 이상	△0.20																	
		C. 95% 미만 90% 이상	△0.40																	
		D. 90% 미만 85% 이상	△0.60																	
		E. 85% 미만 80% 이상	△0.80																	
		F. 80% 미만	△1.00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 여부 및 감점된 합산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감점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text{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times 100$ * 투입계획 위반 감점을 위한 환산건수는 이 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건수를 기준으로 함.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	-내용 변경 -내용 추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table> <tr> <th>심사분야</th> <th>심사요소</th> <th>평가기준</th> <th>평가점수</th> </tr> <tr> <td>참여기술인투입계획 위반</td> <td>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참여기술인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td> <td>참여기술인이 당해 수리현장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경우</td> <td>매 건당 △1</td> </tr> </table>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table> <tr> <th>심사분야</th> <th>심사요소</th> <th>평가기준</th> <th>평가점수</th> </tr> <tr> <td>국가유산수리계획이행여부 위반</td> <td>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td> <td>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이행 여부</td> <td>매 건당 △1</td> </tr> </table>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기술인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참여기술인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	참여기술인이 당해 수리현장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경우	매 건당 △1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이행여부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이행 여부	매 건당 △1	-평가기준 추가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기술인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참여기술인의 투입계획 이행 여부	참여기술인이 당해 수리현장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경우	매 건당 △1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이행여부 위반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이행 여부	매 건당 △1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	- 계약신뢰도 세부심사 방법으로 이동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삭 제>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내용 보완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총괄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서식	수리실적	4	가.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또는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서식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 내용 변경 및 추가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의2 서식	
		다.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다. 동일 배치기술자 중복 입찰 미참여 서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라.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또는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신청자				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신청자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수리업경력	7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업경력	7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수리지역 전문성	8	가.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또는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9	가.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9	가.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나.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3 서식			나.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3 서식	

- 제출서류
추가
- 제출서류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추가 - 제출서류 추가 - 제출서류 추가 - 제출서류 추가 - 제출서류 추가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0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국가유산수리업자	1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서 사본	국가유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참여기술인 투입 (전문교육 이행실태)	12	가. 참여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등록권자		
국가유산수리 계획	13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경영상태	13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국세청 관련 협회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국가유산수리 계획	14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5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별표 1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생략>					[별표 1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 <생략>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 <현행과 같음>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서식보완 -제목 변경 -내용 추가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안전관리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전문교육 이행실태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교육 이행실태)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참여기술인 투입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계				합계					
3. <생략>				3.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생략>				1. 수리실적 심사 <현행과 같음>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1) 배치 기술자 능력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구분		연번	국가유산 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구분		연번	국가유산 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내용 보완
최근 5 년 간 해 국 유 산 수 리 동 이 상 인 국 유 수 를 행 한 실 적	보수 제000호 홍길동 2015.00. 00	1	○○○ 보수	1141	000,000	00	0	최근 5 년 간 해 국 유 산 수 리 동 이 상 인 국 유 수 를 행 한 실 적	보수 제000호 홍길동 2015.00. 00	1	○○○ 보수	1141	000,000	00	0	
		2	○○○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2	○○○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3						
		4								4						
		5								5						
		6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 자 이름 입사일	1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 자 이름 입사일	1							
		2							2							
		3							3							
		4							4							
		5							5							
		6							6							
평가기준		Σ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해당 국가유산수리					건	평가기준		Σ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해당 국가유산수리					건	
평가점수		점						평가점수		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각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5. 신인도				- 제목 변경																																																										
1) 수리지역 전문성 <현행과 같음>				1) 수리지역 전문성 <현행과 같음>																																																														
2) 영업정지 처분				2) 영업정지,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table><tr><td colspan="2">구분</td><td>구성원 I</td><td>구성원 II</td><td>구성원 III</td></tr><tr><td rowspan="2">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td><td>횟수</td><td>건</td><td>건</td><td>건</td></tr><tr><td>기간합계</td><td>개월</td><td>개월</td><td>개월</td></tr><tr><td colspan="2">평가점수</td><td>점</td><td>점</td><td>점</td></tr><tr><td colspan="2">Σ 평가점수</td><td colspan="2">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td><td>점</td></tr><tr><td colspan="2">증빙서류</td><td colspan="3">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td></tr></table>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table><tr><td colspan="2">구분</td><td>구성원 I</td><td>구성원 II</td><td>구성원 III</td></tr><tr><td rowspan="2">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td><td>횟수</td><td>건</td><td>건</td><td>건</td></tr><tr><td>기간합계</td><td>개월</td><td>개월</td><td>개월</td></tr><tr><td colspan="2">평가점수</td><td>점</td><td>점</td><td>점</td></tr><tr><td colspan="2">Σ 평가점수</td><td colspan="2">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td><td>점</td></tr><tr><td colspan="2">증빙서류</td><td colspan="3">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td></tr></table>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신설>				<table><tr><td colspan="2">구분</td><td>배치 기술자</td><td>배치 기능자</td></tr><tr><td rowspan="2">최근 3년간 자격정지 처분</td><td>횟수</td><td>건</td><td>건</td></tr><tr><td>기간합계</td><td>개월</td><td>개월</td></tr><tr><td colspan="2">평가점수</td><td>점</td><td>점</td></tr></table>				구분		배치 기술자	배치 기능자	최근 3년간 자격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양식 추가																																											
구분		배치 기술자	배치 기능자																																																															
최근 3년간 자격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3) 안전관리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구성원 I</th><th>구성원 II</th><th>구성원 III</th></tr><tr><td rowspan="3">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td><td>최근년도</td><td></td><td></td><td></td></tr><tr><td>최근년도 1년전</td><td></td><td></td><td></td></tr><tr><td>최근년도 2년전</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평가기준 = A / B</td><td>%</td><td>%</td><td>%</td></tr><tr><td colspan="2">평가점수</td><td>점</td><td>점</td><td>점</td></tr><tr><td colspan="2">Σ 평가점수</td><td colspan="2">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td><td>점</td></tr><tr><td colspan="2">증빙서류</td><td colspan="3">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td></tr></table>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구성원 I</th><th>구성원 II</th><th>구성원 III</th></tr><tr><td colspan="2" rowspan="3">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td><td>건</td><td>건</td><td>건</td></tr><tr><td>점</td><td>점</td><td>점</td></tr><tr><td colspan="2">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td><td>점</td></tr></table>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건	건	건	점	점	점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건	건	건																																																																																																																																																																																								
		점	점	점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4) 공동수급체 구성 <생략>						4) 공동수급체 구성 <현행과 같음>																																																																																																																																																																																						
5) 전문교육 이행실태						5) 전문교육 이행실태 <삭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연번</th><th>기술자 명</th><th>자격종목</th><th>자격번호</th><th>전문교육 이수일</th></tr><tr><td rowspan="10">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td><td rowspan="6">구성원 I (시공비율 %)</td><td>1</td><td>홍길동</td><td>보수</td><td>125</td><td>2016.02.16~20</td></tr><tr><td>2</td><td>홍이동</td><td>보수</td><td>135</td><td>해당없음</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5">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td><td>%</td></tr><tr><td colspan="5">평가점수</td><td>점</td></tr><tr><td rowspan="6">구성원 II (시공비율 %)</td><td>1</td><td></td><td></td><td></td><td></td></tr><tr><td>2</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5">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td><td>%</td></tr></table>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연번</th><th>기술자 명</th><th>자격종목</th><th>자격번호</th><th>법정 전문교육 이수일</th></tr><tr><td rowspan="10">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법정 전문교육 이수 여부</td><td rowspan="6">구성원 I (시공비율 %)</td><td>1</td><td>홍길동</td><td>보수</td><td>125</td><td>2016.02.16~20</td></tr><tr><td>2</td><td>홍이동</td><td>보수</td><td>135</td><td>해당없음</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5">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td><td>%</td></tr><tr><td colspan="5">평가점수</td><td>점</td></tr><tr><td rowspan="6">구성원 II (시공비율 %)</td><td>1</td><td></td><td></td><td></td><td></td></tr><tr><td>2</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5">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td><td>%</td></tr></table>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법정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법정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항목 삭제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법정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법정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평가점수	점			평가점수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신 설>				5)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신 설>						
					구 분	연 번	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지정권자	유효기간(1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지정된 자		1		00000000	국가유산청장	2024.02.16.~ 2025.02.15
						2				
						3				
						4				
						5				
						6				
						평가기준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여부				점
				증빙서류		1.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서 1부.				
<신 설>				6) 참여기술인<신 설>						-증빙자료 추가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기간
				입찰공고일 당시 입찰자 소속 기술자 중 해당 수리 분야 3년 이상 경력기간 보유자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 2019.02.15
						2				
						3				
						4				
						5				
						6				
						평가기준 = ‘가점대상’ 투입 여부				%
				증빙서류		1. 참여기술인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6) 경영상태					7) 경영상태					- 심사요소 변경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구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자기자본 비율	입찰자 평균 자기자본비율(A)				부채비율	입찰자 평균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유동비율	입찰자 평균유동비율(C)				유동비율	입찰자 평균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평가점수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증빙서류 추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수리 코드			I. 일반적인 사항		주원 수리코드[] ※해당란에○표	대표업체 또는 공동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 관 (발주 자)			분담 수리코드[] ※해당란에○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 급체가 시공한 수리 코드 기입		
수리위치										
수리업체	업체		수리업		수리명				발주기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대 표)	명		종류 및 등록번호		수리위치				관 (발 주 자)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계약일 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천원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계약일 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천원			
	착공일 자		수리기간 (일)	일		착공일 자		수리기간 (일)	일			
	준공일 자		국가유산 명	서울 홍인지문		준공일 자		국가유산 명	서울 홍인지문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해당란에 ○표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해당란에 ○표						
II.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II.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I(대표)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구 분	구 성 원 I(대표)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회 사 명					회 사 명							
대 표					대 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수 리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수 리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III.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III.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I		기 술 자 II	기 술 자 III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배치기간 준공금액(천원)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보정배치일수 일 일 일				- 내용 추가
구분	기술자 I	기술자 II	기술자 III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배치일수	일	일	일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 내용 추가
구분	하도급자 I	하도급자 II	하도급자 III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Ⅴ. 붙임				Ⅴ. 붙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사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대표자명(또는 신청 기술자 명): (서명 또는 인)				20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사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대표자명(또는 신청 기술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 주 :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2) 수리구분 가. 지정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에 있어야 함. 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함. 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인) 발급자명: 연 락 처 : 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2) 공동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 평가대상 모든 수리코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종의 수리코드에 “○” 를 표기하여야 함. 3) 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 배치일수’ 를 산정한다. * 보정계수: 현장대리인 1.0, 참여기술인 0.7 4) 수리구분 가. 지정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5)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에 있어야 함. 7)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8)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함. 9)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0)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 서식 및 내용 변경	
구분	소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명	비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구분	소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명	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이동	참여기술인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가점대상)</td></tr><tr><td>국가유산수리기술자</td><td>갑을건설(주)</td><td>보수</td><td>00</td><td>홍이동</td><td>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가점대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이동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내용 추가
					(가점대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이동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추가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OOOO 귀하																																																																																				
<신 설>						※ 주 :																																																																																				
						1) 기술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 부합하는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여부 확인 후 기재 - 본 기준 제2조제11호의 참여기술인 요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인 여부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 에는 역할에 따라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표 5]의 “5.신인도” 분야 “사” 목의 ‘참여기술인 투입 심사’ 대상자는 “담당업무” 에 “참여기술인(가점대상)” 으로, 비대상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 으로 기재																																																																																				
						[별지 제5의 2호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구분		연번	국가유산 수리명	수리코 드	준공 금액 (천원)	수리 기간 (일)	담당 업무	
당초 배치기 술자 능력	자 격 종 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기능자)이 름 입사일	1	000 보수	1141	000,000	00	현장대 리인			
		2								
		3								
		4								
		5								
평가기준(환산건수)		$\Sigma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건	
교체 배치기 술자 능력	자 격 종 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기능자)이 름 입사일	1	000 보수	1141	000,000	00	현장대 리인			
		2								
		3								
		4								
		5								
평가기준(환산건수)		$\Sigma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건	
교체 배치기술자 환산건수/당초 배치기술자 환산건수 비율		%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각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주 : 1)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내용 보완																								
<신 설>	[별지 제5의 3호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 확인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연번</th><th>국가유산수리명</th><th>수리코드</th><th>계약일자</th><th>투입일자</th><th>담당업무</th></tr><tr><td>평가시점 참여기술인</td><td>-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술인 (기능자) 이름 -입사일</td><td>1</td><td>○○○ 보수</td><td>1141</td><td>2023. 01.05</td><td>-</td><td>평가대상 참여기술인(가점대상)</td></tr><tr><td>착수시점</td><td>-자격종목 및 번호</td><td>1</td><td></td><td></td><td>2023. 01.05</td><td>2023. 01.15</td><td>변경투입</td></tr></table>	구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계약일자	투입일자	담당업무	평가시점 참여기술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술인 (기능자) 이름 -입사일	1	○○○ 보수	1141	2023. 01.05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가점대상)	착수시점	-자격종목 및 번호	1			2023. 01.05	2023. 01.15	변경투입	- 서식 추가
구분		연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계약일자	투입일자	담당업무																			
평가시점 참여기술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술인 (기능자) 이름 -입사일	1	○○○ 보수	1141	2023. 01.05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가점대상)																			
착수시점	-자격종목 및 번호	1			2023. 01.05	2023. 01.15	변경투입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 선(안)						비고	
		(변경)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기능자) 이름 -입사일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경력기간		자격취득 일자(2021.01.010.) ~ 입찰공고 일자(2023 02.05)					년 개월
		변경 참여기술인 등등경력 여부		동등(3년 이상) [] / 비동등(3년 미만) []					
		증빙 서류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신 설>		[별지 제5의 4호 서식] 동일 배치기술자 중복 심사 불가 확인 서약서							- 서식 추가 - 적용상세는 Q&A 반영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의4 서식] 동일 배치기술자 중복 심사 불가 확인 서약서 당사는 「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 심사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 주 :

1) “동일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과 참여기술인 모두를 포함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생략>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 내용 변경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 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5년간” 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 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 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신 설>						[별지 제6호의3 서식] (최근 3년간)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구분</th> <th>성명</th> <th>자격 번호</th> <th>처분내용</th> <th>처분기간</th> <th>처분 일수</th> <th>처분권 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기술자</td> <td>홍길동</td> <td>00</td> <td>자격정지</td> <td>2015.05.01. ~ 2015.05.30</td> <td>30일</td> <td>서울특 별시장</td> <td></td> </tr> <tr> <td>2</td> <td>기능자</td> <td>홍이동</td> <td>00</td> <td>자격정지</td> <td>2015.05.01. ~ 2015.05.30</td> <td>30일</td> <td>서울특 별시장</td> <td></td> </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연번	구분	성명	자격 번호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 일수	처분권 자	비고	1	기술자	홍길동	00	자격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 별시장		2	기능자	홍이동	00	자격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 별시장																																						- 서식 추가
연번	구분	성명	자격 번호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 일수	처분권 자	비고																																																																			
1	기술자	홍길동	00	자격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 별시장																																																																				
2	기능자	홍이동	00	자격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 별시장																																																																				

본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안)	비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 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기술자 또는 기술인의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생략>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생략>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생략>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현행과 같음>	